

公共圖書館大會發表議題

公共圖書館의 設置基準問題點

發表者 朴 二 根
 <大邱市立圖書館 司書長>

從來 우리나라 公共圖書館 設置運營의 法的根據을 살펴보면 地方自治法 第125條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라는 規定으로서 그 命脈을 이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義務規定이 아닌 任意規定으로서 存在했기 때문에 圖書館發展을 阻止해왔다해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圖書館法을 母體로한 理想의이며 現實에 適合하도록 施行令이 公布되어야만 法의 保護아래 公共圖書館이 育成될 것입니다.

1. 意 義

圖書館의 三大要素인 建物 即 施設은 單純한 利用目的이 아니고 그 地域社會의 人口數를 對象으로한 奉仕計劃에 適合한 建物을 말한다.

公共圖書館이란 固定된 建物로서 存在價值가 있는 것이 아니고 活動하는 即 움직이는 奉仕組織體로서 存在意義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公共圖書館의 施設과 運營方法은 奉仕對象에 따라 相異하므로 確固한 施設基準을 定할 수 없는 것이 原則이다.

本 論

設置基準의 問題點

I. 設置基準의 先決問題

(1) 圖書館性格의 決定

公共圖書館施設을 計劃設計하는데는 먼저 그 圖書館의 性格을 明確히 決定해야 된다.

같은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도 文化施設이 좋은 都市와 文化施設이 貧弱한 農村地域에 位置한 圖書館과의 性格의 差異, 資料의 種類, 保存方法, 閱覽方法等을 考慮해서 圖書館의 規模나 設置의 構成要素가 定해야 한다.

(2) 構造와 美觀

構造에 있어서는 豫算策定이 先決問題입니다만 한 公共圖書館을 新築하는데는 다음 몇 가지 點을 特히 留意해서 着手해야 한다.

A.L.A원 公共圖書館奉仕(Public Library Service)라는 책에 依하면

- 公共圖書館建物은 매력이 있어야 하며 利用하기에 便利해야 된다.
- 公共圖書館建物은 뚜렷하게 나타나야한다.
- 公共圖書館入口는 큰거리에 있어야한다.

d. 外觀上으로 본 公共圖書館의 美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圖書館構造는 能率的이고 流通性 있고 넓어야 하며 最少限 20年동안의 奉仕와 福祉社會發展의 擴張을 위해서 計劃되어야 하고 必要에 따라 商業建物(營利目的)로 바꿀 수 있도록 設置되어야 한다. 또한 書庫와 閱覽室은 外部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讀書意慾을 북돋우어야 한다.

(3) 將來計劃

一般的인 圖書館設置計劃은 現實情에足할 程度로 만드는 것이 常例이다. 그러나 넓은 視野에서 生覺해볼 때 세월이 지남에 圖書의 增加數는 높아가지만 여기에 比例해서 圖書館의 施設이 增築되기는 至極히 어려운 일이다. 故로 將來를豫想해서 擴張할 餘地를 두어야 한다.

II. 設置基準點

公共圖書館設置基準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

即 理想的인 設置基準과 最低設置基準인데 前者는 希望속에 쌍인 宿題이므로 長久한 時間이 解決의 Key가 될 것이다.

그러나 後者は 經濟的 社會的 現實에 비추어 推進可能性이 濃厚하므로 公共圖書館發展의 緊急措置로서 于先 最低設置基準을 指하여 公共圖書館이 坊坊谷谷에普及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와같이 最低設置基準을 基盤으로 하여 漸次的으로 理想基準에 到達할 수 있도록 年次計劃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러면 最低設置基準을 어떻게 定해야 될것이냐?

이 基準에 있어서도 公共圖書館을 階層別로 區分해서 定해야 된다.

첫째로, 市에 設置할 境遇
둘째로, 郡所在地에 設置할 境遇
셋째로, 面, 村에 設置할 境遇
모두를 地域社會實情과 奉仕人口數에 比해서 設置規定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隣接 日本 公共圖書館 最低施設基準을 參考로 우리나라 最低基準을 만들어 볼作定입니다.

(日本圖協編 圖書館頸드록, 702 page에
日本 公共圖書館 47館의 面積配分의 實地調查에 依한 圖表)

圖書館의 種類	各室의 對 全體에 比 率
館內 閱覽室	府縣立 30%
	市立 40%
	區立 60%
管 理 事務室	府縣立 10%
	市立 10%
	區立 10%
館外活動	府縣立 0.5%
	市立 0.5%
	區立 0.5%

※ 이 圖表에 依하면 館은 圖書館일 수록 閱覽室의 面積이 全體建坪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館圖書館은 視聽覺室, 館外活動을 為한 設置가 必要되므로 閱覽室은 比較적 차지한다.

※ 이 圖表는 一般的인 面積配分이지만 特殊한 境遇 獨自의인 面積配分도 있을 수 있다.

다음은

公共圖書館面積配分基準案

	府縣立圖書館	市立圖書館	村立分館	備考
閱覽室	20~33%	30~50%	50~80%	
事務室	10~30	10~20	10~20	
館外活動	10~30	0~10	0~10	

以上을 參考로 우리나라의 最低設置基準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公共圖書館最低施設基準

建物面積						基本 藏書數	年間 增加數	基準人口
面積	閱覽室	兒童 閱覽室	定期刊 行物室	書庫	事務室			
165平方米 (50坪)	80席 建坪의 (90%)		建坪의 10%			500卷 以 上	200卷	2萬以上 3萬未滿
330平方米 (100坪)	120席 " (66%)	20席 建坪의 (12%)	" 10%		建坪의 6%	1,000卷 以 上	300卷	10萬未滿
660平方米 (200坪)	300席 " (60%)	50席 " (50%)	" 5%	建坪의 10%	" 10%	1,500卷 以 上	500卷	20萬未滿
990平方米 (300坪)	300席 " (60%)	70席 " (15%)	" 5.7%	" 10%	" 9.3%	2,000卷 以 上	1,000卷	30萬未滿
1,320平方米 (400坪)	400席 " (60%)	100席 " (15%)	" 7.5%	10%	7.5%	2,500卷 以 上	1,500卷	40萬未滿
1,650平方米 (500席)	500席 " (60%)	150卷 " (18%)	6%	10%	6%	3,500卷 "	2,000卷	50萬未滿
1,980平方米 (700坪)	700席 " (60%)	200席 " (15%)	5%	12.5%	7.5%	5,000卷	3,000卷	50萬以上

圖表에 依한 說明

- ① 全體面積에 對한 閱覽室의 比率이 60% 차지하고 있는 點은 共通的이다.

② 어린이 圖書室

- 어린이 圖書室이란 公共圖書館의 必須 要件으로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證明

된다. 利用에 있어서도 個人보다 여려사람이 “구름”을 形成하여 工夫하므로 여려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책상이 絶對必要하다.

例, 圓卓冊床을 備置하며 館員이 直接指導할 수 있도록 適當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분위기는 讀書에 對한 趣味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不斷한 干涉을 피하고 個性을 살려 健全한 讀書習慣을 길ter야 한다.

③ 基本藏書에 比해 年間增加數가 엄청나게 많은 理由는 施設과 장서를 一時에 完備하기엔 어려운 일이므로 施設을 為主로 짧은 期間內에 장서를 確保하기 위해서 年間增加數를 높인 것입니다.

④ 閱覽室 一層으로 하되 規模에 따라 防音장치, 採光, 色採, 空氣調節等을 留意할 것이며 直射光線, 번쩍거리는 螢光燈은 피해야 된다.

(例 美國, 光度는 적어도 50foot-candle (광도의 단위)는 되어야 한다)

⑤ 書庫 増築의 餘地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또한 通風이 잘 되어야 하며 書架配列의 간격은 두 사람이 自由롭게 지나갈 수 있을 程度, 書架의 構造는 6단~7단으로 하되 虫害放火等을 防止하기 為해 木製보다 鐵製로하는 것이 좋다.

⑥ 定期刊行物室 가벼운 마음과 自由로운 氣分으로 利用하는 簡易休憩室의 役割을 하므로 되도록이면 安樂椅

子를 備置해야 되며 그 間隔도 普通閱覽室보다 넓어야 한다.

例, 한 사람이 占하는 面積 1,5m²~2.0m²이다.

結 言

公共圖書館設置基準에 隨伴해서 分館設置基準도 定해야 한다.

한 圖書館의 利用範圍는 1km² 内에 居住하는 人口에 制限된 것처럼 遠거리利用者數가 적다. 故로 地方公共圖書館은 適當한 地域에 Reading Center로서 奉仕할 수 있는 施設과 場所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分館設置인 것이다. 現下 우리나라도 地方圖書館을 中心으로 많은 分館이 設置되어 많은 사람에게 圖書館 惠澤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分館의 設置는 곧 큰 圖書館으로 옮겨가는 過程이 될 것이다.

圖書館以外의 讀書施設

最近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文化館 公報館等이 設立되어 그속에 圖書室이 設置되어 있는 곳이 많다.

이와 같이 文化 Center를 通한 讀書施設이 圖書館 惠澤을 받지 못하는 地域社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行政當局의 協助를 얻어 國有財產인 故產建物을 補造 및 改修하여 圖書館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努力하면 圖書館擴張에 큰 보람이 될 것이다.